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4,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영 HMRC,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추가 지침 초안 공개

2025년 1월 28일, 영국 과세관청("HMRC")은 영국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추가 지침의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Consultation)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초안은 영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가세제도(MTT) 및 소재지추가세제도(DTT)에 관한 네 번째 초안 지침입니다. 기존 초안은 각각 2023년 6월, 2023년 12월 및 2024년 9월에 공표된 바 있습니다.

HMRC는 금번에 공개된 초안 뿐만 아니라 기존 초안에 대한 의견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안도 2025년 4월 8일까지 접수 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HMRC는 이번이 마지막 초안 지침이 될 것으로 밝혔으며, 최종 지침은 2025년 늦은 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1. 금번 초안에 포함된 추가 내용

- 재무법 2024-2025 (안)에 신규 추가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대한 지침
- 재무법 2024-2025 (안)에서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들에 대한 지침

- 
- Joint Venture 그룹, 도관기업 및 보험 부문 관련 지침
  - 추가세액 가산금액 및 신고 이후 세액 조정에 관한 지침
  - 과거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지침

금번 초안에는 영국의 독자적인 접근 방식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시 Protected Cell Company (“PPC”)<sup>1</sup>는 각 Cell 을 독립된 법인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PPC 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 규정에는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PPC 의 세무처리에 대한 해석이 아직은 다소 모호합니다.

## 2. 추후 변경 예정 내역

HMRC 는 최종 지침서 발행 전 추가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될 지침들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재무법 2024-2025 (안) 확정시 수정된 사항들에 대한 지침
- 英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및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 규정 간의 매핑 지침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지침과 통일된 재구성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지침
-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지침

한편, HMRC 는 적격 소득 분배에 대한 세금 규정(Eligible Distribution Tax System), 공제 가능한 배당 제도(Deductible Dividend Regimes) 및 다중 모기업 그룹(Multi-Parent Groups)에 대한 지침은 발행할 계획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3. 결론

이번 지침 초안은 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주요 법적/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으로 영국 내 다국적 기업 그룹 및 세무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향후 HMRC 가 최종 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은 2024 년 4 월 8 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2025 년 1 월 3 일, 베트남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MCAA for CbCR”)에 서명하였습니다. MCAA for CbCR 에 서명한 국가는 다른 협정 국가들과 국가별보고서 양자 교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타방 국가의 국가별보고서를 수취할 수 있으며, 2025 년 2 월 13 일 기준 베트남이 국가별보고서를 수취한 국가는 29 개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sup>1</sup> 영국 보험업법 403조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PPC는 산하에 Cell로 불리는 사업부문을 둘 수 있으며, 이들 Cell은 독립적으로 보험업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베트남은 MCAA for CbCR 협정국가들과 양자 교환을 지속적으로 개시하여, 모든 협정국들과 자동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4-법규국조-0081 (2024.07.31)

제목: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 18 조 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2개의 중간외국법인(A법인, B법인)을 통해 간접 출자한 미국법인(이하 "C법인")은 해외 각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CFC적용 대상임
- 첫 번째 중간외국법인(이하 "A법인")은 질의법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기주식 전체를 일시에 소각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 2. 질의요지

- C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법인에 기과세된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적용 시 실제로 배당한 경우의 범위에 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3. 답변내용

-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 4.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

## 03

### 관세

#### 관세청 '정기 외환검사 제도' 도입

#### 1. 개요

- 관세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외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 외환 검사 제도**의 신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 이는 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 **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무역거래를 통한 외환 규제 회피 및 불법 외환유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됨

#### 2. 정기 외환검사 제도

##### 1) 의의

- 관세청은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 환거래법 및 관련 세법 준수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번 정기 외환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 관세청은 **외환시장과 무역거래 간의 연계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외환규제의 집행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 내용

- ① **대상:** 일정 규모 이상 외환 거래 기업 및 금융기관
- ②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외환관리규정 등
- ③ **조사권자:** 세관(기획재정부장관은 세관에 권한과 외환검사 방법을 위임)
- ④ **주요 조사분야:** 수출입대금 결제 적법여부, 외환거래 신고 및 보고 의무 준수 여부
- ⑤ **조사기간:** 실지검사 및 서면검사를 합쳐 120일 이내
- ⑥ **조사방식**
  - 실지검사: 대상자 방문 조사
  - 서면검사: 제출된 서류 및 신고 내역 조사

- 공동검사: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동 조사

⑦ **Penalty**

-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거래 제한
-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3. 시사점**

- 관세청의 정기 외환검사 도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준법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기초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및 이전가격 조정과 연계된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은 외환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환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